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 - 116

제출년월일 : 2015. 11.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준공예정에 따라 사업구역 내 2개의 법정동(현석동, 신수동)을 하나의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수동 430-5번지 외 62필지 6,495m²를 현석동으로 편입(법정동 변경)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규제여부 : 제외 법령

4.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5. 9. 24. ~ 2015. 10. 14.(제출된 의견 없음)
- 나.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 제외 법령
- 다.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 평가 : 제외 법령
-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 : 2015. 10. 29.
-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바.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연혁표 1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정연혁표 11)

신수동 430의 5번지, 신수동 445의 22번지, 신수동 445의 24번지, 신수동 445의 27번지, 신수동 446의 3번지, 신수동 446의 9번지부터 신수동 446의 10번지 까지, 신수동 448의 37번지, 신수동 448의 41번지, 신수동 448의 45번지, 신수동 449의 1번지부터 신수동 449의 17번지까지, 신수동 449의 19번지, 신수동 449의 23번지부터 신수동 449의 25번지까지, 신수동 449의 30번지부터 신수동 449의 52번지까지, 신수동 449의 54번지부터 신수동 449의 55번지까지, 신수동 449의 59번지부터 신수동 449의 61번지까지, 신수동 449의 63번지부터 신수동 449의 66번지까지를 현석동에 편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p>(개정연혁표11)</p> <p><u>신수동 430의 5번지, 신수동 445의 22번지, 신수동 445의 24번지, 신수동 445의 27번지, 신수동 446의 3번지, 신수동 446의 9번지부터 신수동 446의 10번지까지, 신수동 448의 37번지, 신수동 448의 41번지, 신수동 448의 45번지, 신수동 449의 1번지부터 신수동 449의 17번지까지, 신수동 449의 19번지, 신수동 449의 23번지부터 신수동 449의 25번지까지, 신수동 449의 30번지부터 신수동 449의 52번지까지, 신수동 449의 54번지부터 신수동 449의 55번지까지, 신수동 449의 59번지부터 신수동 449의 61번지까지, 신수동 449의 63번지부터 신수동 449의 66번지까지를 현석동에 편입한다.</u></p> |